

2007년 한·중 통계협력회의 결과 보고

2007. 6.

통 계 청
(한중통계협력회의대표단)

목 차

I. 회의 개요

1. 회의 목적 1
2. 회의 기간 및 장소 1
3. 대표단 구성 1
4. 회의 주제 1
5. 주요 일정 2

II. 회의 내용

1. 중국 국가통계국 3
2. 중국 귀주성 통계국 22
3.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통계국 25

III. 회의결과 및 시사점 26

[붙임자료]

1. 중국의 주요 통계조사 실제사례 28
2.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시행세칙 35
3. 한중양자협력회의 관련사진 54
4. 한중양자협력회의 대비 질의서 58

[별첨자료]

1. 중국통계체제 개요
2. 중국적 통계법제공작
3. 중국의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통계훈련의 현황과 미래
4. 한국의 국가통계제도
5. 한국의 통계조정제도

I. 회의 개요

1. 회의 목적

- 우리 청과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신 통계기법의 상호 전수·습득, 각종 통계정보 교류 등을 통해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 및 국가통계 발전 도모
 - ※ 1993년 양 기관이 상호협력약정 체결 및 상호 방문을 시작으로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각 1회씩, 총 2회의 협력회의를 개최
- 양 국의 국가통계제도와 통계법령, 통계조정제도, 통계교육제도 등에 대한 상호 소개 및 집중적인 토의를 통한 시사점 도출로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 발전에 기여

2. 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7. 5. 14(월) ~ 5. 21(월)
- 장 소 : 북경시, 귀양시(귀주성), 계림시(광서장족자치구)

3. 대표단 구성

- 단 장 : 제정본(통계정책국장)
- 단 원 : 김한식(서비스업동향과장), 송성헌(통계정책과), 김시윤(국제통계협력과), 홍연권(통계협력과)

4. 회의 주제

- 중국의 통계법 및 통계제도
 -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 통계활동관련 법령체계, 통계법령 개정절차 및 주요 내용, 개정 계획

- 중국의 통계교육제도
 - 중국의 통계교육 체계, 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의 구성 및 기능, e-learning 또는 cyber 통계교육 실시 현황 및 방향
- 중국의 통계조정제도
 - 통계작성의 승인관련 제도, 국가통계 조정담당기관, 통계 결과의 공표제도,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통계작성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제2차 한중독 공동세미나 개최
 - '07.7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 중국, 독일 통계청(국) 주최 공동세미나의 개최 시기, 방법 등 협의

5. 주요 일정

- 5.14(월) : 출국 및 중국 북경시 도착
- 5.15(화)~5.16(수)
 - 중국 국가통계국 방문 및 회의안건 설명·토론 등
- 5.17(목)~5.18(금)
 - 귀주성 방문 및 귀주성 통계국과 상호 업무소개 등
- 5.19(토)~5.20(일)
 - 광서자치구 방문 및 광서자치구 통계국과 상호 업무소개 등
- 5.21(월) : 귀국

II. 회의 내용

1. 중국 국가통계국

(1) 중국 국가통계국 주요 참석자

- Xie Fuzhan (국장)
- Xie Hongguang (부국장)
- Du Weiqun (국제합작사사장)
- Zhang Jun (국제합작사부사장)
- Xia Rongpo (통계교육중심부주임)
- Liu Heng (정책법규사부사장)
- An Yuhuan (국제합작사처장)
- Zheng Yunyang (농촌사조연원, 통역)
- 그 외 통계설계관리사, 통계교육중심 직원 등 다수

(2) 중국의 통계체계

1) 통계기구 조직체계

□ 정부통계기구

- 중앙정부는 종합적인 통계기구로서 국가통계국이 있고, 국무원 산하의 농업부, 상무부 등에 사(司) 또는 처(處) 급의 개별 통계기구가 설치
- 지방정부는 종합통계기구로 성(省)에는 통계국, 地市 및 縣市, 鄉鎮에는 통계참, 통계조가 구성되어 있고, 개별 부서별로 통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국가통계국 조직 현황

○ 행정기구 : 18개 사(司)급 부서

- 국민경제핵산사에서 국민계정(GDP) 작성
- 국민경제종합통계사에서는 통계연감 제작 및 대외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
- 고정자산투자통계사는 건축업에 관한 통계, 전 사회적인 고정자산투자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
- 정책법규사에서는 통계법 작성과 이행검사, 중국통계의 발전방향 연구 등의 업무 수행

판공실(사무실(처))	국제합작사
정책법규사	통계설계관리사
국민경제종합통계사	국민경제핵산사(국민계정사)
공업교통통계사	고정자산투자통계사
무역외경통계사(무역대외경제통계사)	인구및취업통계사
사회화과기통계사(사회및과학기술통계사)	농촌사회경제통계사
도시사회경제통계사	인사사
재무기건사	이·퇴·휴직간부국
기관당위(기관당위원회)	감찰국

주) 괄호 안은 편의상 우리말로 번역한 명칭임

○ 사업기구 : 12개 중심(中心; 센터), 연구소 등

복무업조사중심(서비스업조사센터)	보사중심(총조사센터)
국제통계신식중심(국제통계정보센터)	계산중심(정보처리센터)
통계교육중심	통계과학연구소
통계자료관리중심	기관복무중심(기관서비스센터)
중국통계신식복무중심(중국통계정보서비스센터)	중국경제경기관측센터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신식보사(중국통계정보사)

주) 괄호 안은 편의상 우리말로 번역한 명칭임

○ 국가통계국 파출기구

성급 조사총대	: 조사총대 31개 + 건설병단 1개
부성급성시(시급) 조사대	: 15개
성시급(시급) 조사대	: 318개
현시급(군급) 조사대	: 887개

- 파출기구는 국가통계국에서 직접 관리(인사, 재정 등)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농가경제조사, 성시가계조사 등 표본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되, 지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조사를 하기도 함
 - ※ 지방정부 통계조직은 자체통계조사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나, 자체통계조사는 아직 많지 않다고 함
 - ※ 국가통계국에서는 보통 성 수준까지의 조사를 관리하나, 통계조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현 수준까지 관리한다고 함

□ 비정부통계기구

- 업종별 협회가 있음
 - 무역촉진회(무역협회), 공소합작중사(농업협동조합), 전력협회, 기업협회(상공회의소) 등
 -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직접 관할하지는 않으나, 정부에서 통계작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

- 정부부문 위탁조사가 많으며, 정부의 요구에 따라 통계조사 실시

○ 업종별 협회 조사기구

- 통계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다른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공상국에 등록하면 됨
- 다만, 외국과 합작하거나 외국의 위탁을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국가통계국의 비준 필요

□ 통계기구간 역할분담

【통계기구간 분공원칙(分公原則; 역할분담 원칙)】

- 국가는 집중통일적인 통계체계를 수립하고, 통일적인 영도(지도)와 각 분급 통계관리책임체계를 실행한다.
- 국무원은 국가통계국을 두고 전국의 통계업무의 영도와 협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 각급 인민정부, 각 부문과 사업조직은 통계임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통계기구를 설치하고 통계인원을 둔다.
- 성급 성 이하 지방정부 통계기구는 통계업무상 상급 통계부문의 영도(지도)를 받는다.
- 각 부문통계기구는 통계업무상 동급 정부통계부문의 영도(지도)를 받는다.
- 업종협회통계기구는 정부유관부문의 위탁을 받아 정부통계와 유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국가통계국

- 국가통계조사계획의 수립, 전국범위의 통계조사에 대한 승인 및 진단
- 국가통계조사의 실시 및 전국범위의 통계자료 제공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현황에 대한 통계분석의 실시 및 통계감독 실시, 국민계정의 개발
- 국가통계표준과 통계조사제도의 제정, 국무원 각 부문 통계조사항목의 관리

○ 지방정부 통계국(성 및 성급 이하)

- 당 행정구역 범위 내 통계업무에 대한 승인 및 진단
- 지방통계조사 실시, 해당 행정구역 범위 내 통계자료 제공
- 해당 행정구역 범위 내 경제와 사회발전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통계감독의 실시, 지역국민계정의 개발
- 해당 지역의 각급 부문통계조사항목의 관리
 - ※ 인사, 예산상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으나, 업무상은 독립하여 국가통계국의 지도를 받음

○ 부문통계기구(개별 부처 등)

- 해당 부문의 통계업무의 실시 및 협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통계조사업무를 완성, 해당 부문의 통계조사계획의 제정 및 실시, 부문통계자료의 제공
- 해당 부문의 정책계획 및 집행에 대한 통계분석과 통계감독 실행
- 해당 부문 통계조사항목의 관리
 - ※ 부문통계의 전국조사 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 부문이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국가통계국의 지도를 받음

☞ 지방에는 국가통계국의 파출조직, 지방정부 통계국, 각 부문의 지방통계조직이 각각 별도로 존재. 다만 조사 계획 수립 시 국가통계국 또는 성급 통계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최종적으로는 국가통계국에서 총괄

□ 정부통계기구의 인력

○ 국가통계국

- 국가통계국 행정부서와 사업부서는 약 1000명(공무원은 280명), 파출기구는 약 19,000명
- 행정부서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반면, 사업부서는 비공무원으로 구성
- 사업부서 중 복무업조사중심과 보사중심의 직원은 거의 공무원에 준해 처우 및 관리하고, 다른 사업부서(산하기관 성격으로 판단됨)의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됨
 - 복무는 별 차이가 없으며, 보수는 사업부서 직원이 공무원보다 높음
 - 퇴직 시의 연금 및 의료보호 등 보상에서 차이가 나나, 사업부서 직원도 퇴직 시 공무원으로 신분전환 가능

○ 부문통계기구

- 처급 기구 3~5명, 사급 기구 20명 안팎
- ※ 업무량에 따라 기구의 크기가 다름

○ 성 통계국 및 조사총대

- 각각 130여명으로서 공무원과 준공무원이 절반 정도씩 구성

○ 시 통계국 및 조사대

- 각각 30~50명

○ 현(우리나라의 군) 통계국 및 조사대

- 각각 10명 안팎

○ 향진(우리나라의 읍면동) 통계인원

- 각 1-2명

【그 밖의 질의답변내용】

- 각 산업별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책임과 중복성에 대해
 -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고 대규모로 진행되며, 모집단 역할을 하는 중요한 통계는 국가통계국에서 시행하고, 일반적인 통계는 각 부문이 시행
 - 기관간에 명확한 구분은 없으며, 부서간에 산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 국가통계국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하지만 부문의 수요에 따라 통계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한 조정이 어려움

- 통계결과 공표 시 사전협의 문제
 - 내부자료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외부로 발표하는 경우 국가통계국의 권위를 인정하여 사전 협의
 - 통계에 관해 통계법이 최고의 규범

- 작성비준(승인) 대상에 1회성도 포함여부
 -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통계조사는 모두 비준 대상임(순수 설문조사 등은 제외)

- 국민계정의 생산에 관해
 - 한국은행과 다르게 중국 인민은행은 부채, 자산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통계만 생산(국가통계국에 보고)

- 국가통계국과 각 부처 생산통계에 관해
 - 공업, 농업, 건축업, 상업 등 주요 통계는 국가통계국에서 담당하고, 위생 등 개별 부문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

- ※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국가통계국과 개별 부처간 업무 영역이 미확정되어 통계작성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데, 부처간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함. 협의가 잘 안 되면, 非法調査로 봄. 비법조사는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대외홍보는 국가통계로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함.

2) 통계조사 지표체계

- 국민경제핵산시스템(93' SNA)
- 업종통계지표체계(국민경제 각 산업(20개)의 생산경영 기본지표로서 종사자수, 산출, 수입, 손실, 재무 등)
- 전문통계지표체계(인구, 과학기술, 농촌, 도시, 노동임금, 사회보장, 농촌가구, 투자, 환경 에너지 등)
- 통계표준체계(행정구역분류번호, 산업분류, 도농표준, 기업분류 유형, 직업분류 등)

3) 통계조사항목체계

- 정부통계부문은 사회 각계의 통계정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통계조사계획을 제정
- 통계조사계획은 구체적으로 국가통계조사항목, 부문통계조사항목과 지방통계조사항목 등 3종의 유형이 있음

□ 국가통계조사항목

- 국가통계국 또는 국가통계국이 국무원의 유관부문(다른 부처 등)과 공동으로 계획하여 국무원 심의에 보고
- 현재 국가통계항목의 포괄 내용
 - 농업, 경제, 인구 등 3개 총조사, 5년 주기의 투입산출조사, 1%인구조사, 국민계정, 전국(도시, 농촌)가계조사, 가격(물가)통계, 농업·공업·건축업 등 주요국민경제업종 통계 등 20여 항목

□ 부문통계조사항목

- 국무원 유관부문이 계획하고 국가통계국 심의에 보고 또는 신청(그중 중요한 것은 국무원 심의에 보고)
- 통계활동을 하는 부문은 약 80개 정도이며, 부문통계조사 항목은 약 400개임

□ 지방통계조사항목

- 지방정부 통계국 또는 동급 유관부문과 공통으로 계획하고 지방정부에 심의 보고
- 국가통계조사항목의 조사표 구성 및 내용, 통계표준, 조사 범위, 조사주기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만들어진 통계조사 항목은 지방통계조사항목으로 간주
- 지방정부가 위탁을 받아 상업적으로 작성하는 조사항목은 제외

□ 일반통계조사항목관리

○ 관리기관

- 국가통계국 통계조사항목 심의 소조
- 심의소조 사무기구(국가통계국 통계설계관리사)
 - ※ 통계에 대한 관리업무는 "설계관리사"에서 수행하며 그 안에 부문관리처, 지방관리처가 있어 각각 부문통계와 지방통계의 비준 및 관리업무를 담당

○ 법규근거

-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및 《실시세칙(시행규칙)》
(1983년 제정, 1996년 수정)

- 《통계조사항목심사관리규정》 (국가통계국문건, 1998)
- 《임시부문통계조사항목관리방법》 (국가통계국국장령, 1999)
- 《지방통계조사항목관리규정》 (국가통계국문건, 2005)

○ 관리절차

- 신청서 제출(목적, 경비예산, 내용, 범위, 주기 등)
- 심의(15일, working day)
- 회신(비준, 수정후비준, 불비준, 승인, 수정승인, 미승인)

○ 관리원칙

- 경비의 확보
- 과학적인 방법
- 유사·중복성이 없을 것
- 부문의 직능과 일치할 것
- 중대한 통계조사항목은 반드시 시험조사를 거쳐야 함

○ 사후감독

- 법정표식 : 조사표번호, 작성기관, 비준기관/검토기관, 비준(우리나라의 통계작성 승인)번호/접수번호, 유효기간 및 중지시기를 포괄함
- 사후감독 : 정기공표, 정기검사, 의법처리

4) 통계조사의 실시

□ 총조사의 실시

① 총조사 기구의 설립

- 국무원

- 국가 유관부문(철도부, 민항, 중국인민은행 등)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 시 인민정부
- 현 인민정부
- 향진(읍면에 해당), 가도(동에 해당) 인민정부
- ② 총조사 방법과 업무추진 방안 수립
- ③ 총조사 동원 및 사회홍보 진행
- ④ 총조사 조사원의 채용 및 교육
- ⑤ 현장조사의 실시
- ⑥ 사후 품질 검사
- ⑦ 데이터 입력 및 처리
- ⑧ 데이터베이스 확립

□ 정기성 통계조사의 실시

- ① 공문 시행
 - 국가통계국에서 성급 통계국과 국무원 유관부문에 공문 시행
 - 국무원 유관부문 단독으로 또는 국가통계국과 합동으로 성급 통계국 및 유관부문에 공문 시행
 - 지방정부 통계기구에서 하급 지방정부 통계기구 및 유관부문 또는 조사대상에 공문시행
- ② 조사방법
 - 전면조사(전수조사)
 - ※ 보고방식을 통한 조사가 많이 시행
 - 표본조사
 - ※ 국가에서 직접 모든 표본을 선정하거나, 국가에서 표본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방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음

③ 현장조사방법

- 행정보고 및 방문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대형기업에 대해 3~4년 전부터 시작)

④ 데이터 내검

⑤ 데이터 처리

⑥ 상급 보고 및 데이터의 검사 접수

□ 중국의 주요 통계조사 실제사례 : 【붙임자료 1】 참고

(3) 중국의 통계법제

□ 통계법 체계

○ 통계법률

- 1983년 제정, 전국인민회의(상무위원회)에서 비준, 통계와 관련된 최상위의 법률

○ 통계행정법규

- 국무원에서 비준, 각종 총조사 집행세칙, 통계조사표 관리방안 등

○ 지방통계법규

- 지방입법기관에서 비준, 모든 성시에 존재, 상위 2개 법규의 기본원칙을 준수

○ 통계규장

- 국무원 각 부문의 각 내부 통계활동 관련 규정
- 통계국에는 19개가 있음. 통계조사항목관리방법, 통계조사인원관리방법, 통계자료관리방법 등

□ 통계법의 주요내용

- 통계업무의 기본원칙
 - 통일성 : 국가는 통일적으로 통계관련 업무를 수행
 - 독립성 : 각 지방의 간부(지도자)들은 통계업무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없음
 - 과학성

- 통계관리체제와 통계조직제도
 - “ 통일적인 지도, 분급 책임(책임의 위임)”
 - 국가통계국의 설립
 - 지방 각급 통계기구의 설립
 - 통계법에는 현급 이상 모든 정부에 독립적인 통계조직이 있어야 함을 규정
 - ※ 각 지방통계조직 설립은 각 지역 통계법규에 규정
 - 업무상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지만, 실제 업무상으로는 국가통계국의 지도를 받음
 - 통계담당인력을 임명하는 경우 상급 통계국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각급 정부의 통계국과 다른 기구와는 동일한 지위를 가짐
 - 부문 통계기구의 설립 또는 통계책임자를 지정
 - 통계조직이 큰 경우 통계사가 별도로 존재. 업무량이 적은 경우 계획사 안에 통계처를 두는 경우도 있음

- 통계조사항목관리제도
 - 국가통계조사항목
 -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며 대규모로 진행되는 조사

- 부문통계조사항목
 - 각 부문이 독자적으로 또는 국가통계국과 협조하여 수행
 - 일반조사는 국가통계국의 기준을 받으며, 중대조사의 경우 국무원의 기준을 받음
 - 기존 통계조사와 중복될 경우 국가통계국의 심사를 받음

- 지방통계조사항목
 - 지방정부 통계국에서 관리

- 통계자료관리제도
 - 통계자료비밀제도(제15조)
 - 국가비밀 : 과거에는 많았으나, 점차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
 - 상업비밀
 - 개인, 가정단위 조사자료
 - ※ 국가비밀과 사인에 대한 비밀은 잘 보호되고 있으나, 기업의 비밀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아, 기업 통계에 대해 비밀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

- 통계법률책임제도
 - 적시에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
 -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 법적 책임
 - 통계자료의 허위보고, 누장보고
 - 통계자료의 위조, 조작
 - 반복적인 통계자료의 보고기한 미준수
 - 통계자료 제공의 거부
 - 유관 비밀보호규정의 위반
 - 통계조사표 공표제도의 위반

【그 밖의 질의답변내용】

○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관련

- 통계법 집행업무와 관련, 현금 이상 정부의 통계국에서 위법적인 통계행위에 대해 집행
- 기타 부문은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통계국에 신고하고, 통계국은 조사 후 의법 집행
-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소송법에 근거
- 2006년 18,000건의 조사불성실(거부, 누장보고) 등이 발생
 -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각 부문의 조사가 너무 많아 새로운 통계에 대한 응답거부가 많음
 - 현재까지 기업체의 협조는 좋은 편이며, 행정적으로 설득방법을 주로 사용
-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복 시 법원을 통해 소송이 가능(통계국과 응답자 모두 가능하며, 공민(일반인)은 거의 불가능)

○ 응답거부 시 처리방법 관련

- 응답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 응답자에 대해 설득과정을 우선적으로 진행
 - 실제 행정조치 혹은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있음
- 벌금을 내고도 계속 응답거부 시 어떻게 처리?
 - 한 번에 내는 벌금이 기업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부과하므로 기업의 응답거부는 거의 없음
 - 기업이 벌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기업의 은행계좌를 동결시키기 때문에 아직까지 벌금 부과 후에도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은 없음
 -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통계법 개정 시 벌금 상한액을 올리고, 다른 조치방안을 구상 중임
 - 개인에 대해서는 설득작업이 우선되며 추후 표본을 바꾸는 경우도 있음
- 민간기관의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 통계법은 정부기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민간의 통계활동에 대해 관리방안이 없음. 향후 별도의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함
 - 민간통계관리방안은 통계활동을 하는 민간업체의 설립등록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기업과 같이 공상국에 등록(한국의 사업자등록과 유사)
 - 단, 외국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외국의 위탁을 받는 등 외국과 연계된 경우는 국가통계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 현행 중국 통계법에 존재하는 문제점

※ 자료없이 구두 설명 및 질문형태로 진행

- 계획경제시대인 1983년에 제정되고, 1996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이후 많은 사회변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보호 미약
 - 기업 등의 정보 보호에 대해 규정상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이 명확하지 않음
 - 현실적으로 통계부처와 사회통계조사기구등에서 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음
- 조사항목비준권한상의 문제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모든 조사항목을 국가통계국에서 비준함에 따라 혼잡비용 발생
 - ※ 현급이상 통계국은 해당 관할구역내의 통계에 대해서 승인 권한
 - 일부 통계의 질적인 문제와 함께 통계에 대한 통일적 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정부명의로 발표되는 통계에서도 일정한 혼동과 질적인 문제가 제기
- 법적 책임도 미약
 - 현행법은 조사대상자가 불응하는 경우 등 조사대상자에 대한 처벌 중심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없어 실제 집행하는 데 어려움 발생
 - 예컨대,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발생 시의 처벌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계법 집행에 어려움

- 통계법 및 관련 규칙에 원칙적인 내용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집행에 애로사항 발생
 - 예컨대,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를 발표해야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향후 개정계획

- 2004년부터 전국인민대표회의서 개선을 검토 중
 - 비밀보호 강화와 통계조사항목에 대한 비준 등 심사 권한을 상급기관으로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중국 통계법 내용은 【붙임자료 2】 참고

(4) 중국의 통계교육 : 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

□ 설립 개요 및 기능

- 설립 개요
 - 1986년 4월, 국가통계국 통계간부훈련센터 설립
 - 1996년 1월, 통계교육센터로 개칭
 - 통계교육센터는 국가통계국 산하의 司級 사업단위로서, 주요 기능은 전국의 통계교육훈련과 통계교육훈련 조직영도와 관리사업 수행
 - 예산은 국가예산 사용, 구성원은 준 공무원으로서 대우는 공무원과 거의 같음

○ 통계교육센터의 기능

- 전국통계교육훈련의 기획과 규정 제정
- 전국 정부통계 계통 간부들의 통계관련 훈련, 통계인의 훈련사업, 일반인 통계지식 보급교육
- 통계교육센터 내에 있는 국가통계국 훈련학원 관리
- 전국 통계교재의 편집·출판사업, 통계계통의 외국지식 도입 사업

○ 국가통계국 훈련학원

- 국가통계국 산하의 사업단위로서 1985년 3월 설립.
- TV를 이용해 교육 실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인트라망) 교육 실시

□ 통계교육대상인원

- 전문통계인원 : 국가통계국 소속 직원(행정기구, 사업기구, 파출기구) 약 2만명
- 겸업통계인원 : 약 300만명

□ 국가통계국 통계교육훈련 내용

- 국가통계국 본부의 약 1000여명 교육대상 : 교관요원
- 재직통계인원의 훈련 교육
 - 地(市)급 통계국장연수반 : 1980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
 - 성 통계국장 훈련반 : 그간 약 700명 이수
 - 지구급 통계국장 훈련반 : 그간 약 1100명 훈련

- 통계조사원에 대한 훈련
 - 1998년부터 교육이수 인원이 180만 명 정도임. 매년 약 15만 명이 교육을 받고 있음
 - 통계기초지식을 중심으로 교육 실시
 - ※ 통계관련 직업에 취직하려면 국가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취직 허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교육 실시
 - ※ 기존 조사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계속 실시 중. 자격증은 계속 유효하나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

(5) 제2차 한중독 공동세미나

- 중국대표단의 방한 일정
 - 7월 24일(화) 인천공항 도착
 - 7월 29일(일) 중국으로 귀국
 - ※ 구체적 비행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결정되는 데로 통보
 - 지방 시찰지는 경주로 결정(KTX 이용)
- 한중독 공동세미나 일정에는 전적으로 동의
- 한중 양자통계협력회의 회의(7월 27일) 주제는 아래와 같이 제안
 - 한국 통계시스템 발전 계획
 - 통계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사용
 - 한국의 통계교육 및 훈련. 특히 한국통계청의 통계교육원과 정기적인 교류 희망
- 대표단 명단은 아래와 같음
 - 단장 Mr. Xie Fuzhan (謝伏瞻 先生)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

- Mr. Du Weiqun (杜?群 先生) 국제협력사 사장 대리
- Mr. Song Yuezheng (宋躍征 先生) 무역 및 역외경제 통계사 사장
- Mr. Geng Qin (耿勤 先生) 산업 및 경제통계사 사장
- Mr. Wen Jianwu (文兼武 先生) 전산센터 주임
- 1명 미정(국가발전위원회 과장급)

○ 주요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7. 24(화)	입국	인천공항
7. 25.(수)~26.(목)	제2차 한중독 공동세미나	
7. 27.(금)	제13차 한중통계협력회의	
7. 28.(토)	대구경북지방청 방문	경주
7. 29(일)	출국	미정

2. 중국 귀주성 통계국

□ 주요 귀주성 통계국 참석자

- Tao Mouli (국장)
- Li Jianping (판공실주임)
- 그 외 종합처, 법규처, 설관처 직원 다수

□ 귀주성 소개

- 귀주성 통계국 국장이 장시간에 걸쳐 귀주성의 통계 및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에 대해 소개

- 이후 서로 질의답변 실시
- 통계와 관련 소개 내용
 - 최근 서비스업(특히 관광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 관련 통계가 계속 개발·개선되고 있음. 국가급 관광통계가 13개나 됨
 - 산업화로 농촌공동화(특히 청·장년층의 도시 진출)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주소와 거소가 많이 불일치하여 인구총조사 등을 통한 인구현황 및 동태 파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주요 질의답변내용

- 국가통계국과 귀주성 통계국과의 관계는?
 - 기본적인 통계작성사항은 국가통계국의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귀주성의 환경 및 관광사업 같이 성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음
- 국가통계와 자체통계 작성 현황은?
 - 거의 모두 국가통계국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통계(특히 농업, 공업 등의 통계)임
 - 환경, 환경(생태) 등 13개 통계만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임
- 자체통계 작성증가에 따른 인력, 자원 부족문제는 어떻게 해결?
 - 새로운 통계작성 시 인력과 자원 등이 부족하면 국가통계국의 비준을 받지 못함. 항상 고민되고 있는 부분임
 - 내부용 통계는 예산과 조직이 갖추어질 경우 비준하나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음
- 외부용 통계는 통계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유사중복 부분은 철저히 제거
- 2006년 귀주성에서 신규로 비준된 통계의 수는?
 - 3개 통계를 국가통계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았음
 - 현재 귀주성 통계청 직원 수는?
 - 공무원 90명, 사업체 단체 포함 시 130명
 - 통계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
 -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음
 - 우선 설득, 지도를 한 후, 다음에는 경고, 벌금 등 강제 수단을 이용
 - 귀주성 인구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
 - 인구통계에는 호적인구, 반년 상주인구, 1년 상주인구가 있음
 - 그 중 호적인구는 정확하나, 반년 및 1년 상주인구는 주민들이 호적은 귀주성에 있으면서 실제 다른 성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작성에 어려움
 - 인구총조사시 기준시점 현재 6개월이 지나지 않을 경우는 원적지의 인구로 계산
 - 성차원의 통계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법규는?
 - 국가통계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통계업무 수행
 -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성 차원의 통계조례(귀주성통계조례)가 있음

- 통계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지 또는 성 정부 예산인지?
- 모든 통계예산은 귀주성 정부에서 나옴

3.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통계국

□ 주요 귀주성 통계국 참석자

- Liao Xinhua (국장)
- Li Yan (판공실부주임)
- 그 외 재기처, 법규처 직원 다수

□ 주요 귀주성 통계국 참석자

- 광서장족자치구 통계국 국장이 광서장족자치구의 통계 및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에 대해 소개
 - 자치구 인구 구성상 장족, 묘족 등 소수 민족이 많고, 최근 산업(특히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 신규통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함
 - 한국 통계청과의 많은 교류를 갖게 되기를 희망
- 그 밖에 서로간의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 실태 등에 질의 답변 실시
 - 통계제도는 귀주성 통계국과 유사
 - 통계는 거의 국가통계국의 지침에 따라 작성
 - ※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답변내용은 귀주성 통계국과 차이점이 많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

Ⅲ. 회의 결과 및 시사점

- 중국도 산업화 등 통계환경변화가 급진전되면서 이에 맞는 통계제도 보완 및 통계 개선·개발에 관심이 많음
 - 2004년부터 국무원 차원에서 통계법 및 통계제도에 대한 검토를 실시 중이므로 향후 몇 년 내에 중국 통계법 및 통계제도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 중국 국가통계국 및 교육훈련센터, 성 통계국의 직원들은 우리나라 통계청과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
 - 국가통계제도 외에 인구총조사, 서비스업통계(관광통계) 등 개별통계 작성, IT기술을 이용한 통계의 작성 및 보급방법 등에 관심이 있음
 - 특히 통계교육센터 직원들은 우리청 통계교육원의 통계 교재 개발, 온라인 교육 등 IT기술을 이용한 통계교육방법, 통계교육과정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
 - ※ 우리청 통계교육원과 MOU 체결 등을 통한 교류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양국간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귀국 후 이 사실을 통계교육원에 알려주기로 함

- 한·중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등 협력·교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해당 주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발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성
 - 대표단이 한국의 국가통계시스템 및 조정제도 등에 대한 발표 자료를 통하여 직접 설명함으로써 상호간에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음
 - ※ 다만, 중국 국가통계국(특히 성 통계국)의 경우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은 것 같으므로 필요한 경우 한자로 작성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붙 임 자 료]

- 붙임자료 1 : 중국의 주요 통계조사 실제 사례
- 붙임자료 2 :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시행세칙
- 붙임자료 3 : 한중양자협력회의 관련사진
- 붙임자료 4 : 한중양자협력회의 대비 질의서

[별 첨 자 료]

- 별첨자료 1 : 중국통계체제 개요
- 별첨자료 2 : 중국적 통계법제공작
- 별첨자료 3 : 중국의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통계훈련의 현황과 미래
- 별첨자료 4 : 한국의 국가통계제도
- 별첨자료 5 : 한국의 통계조정제도

중국의 주요 통계조사 실제사례

1. 경제총조사

- 목적
 - 제2차, 제3차 산업의 발전규모, 산업구조 현황 등의 전반적인 파악 및 통계기본단위명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연구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중국인민공화국 역내 제2차, 제3차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단위, 활동단위와 개인상공경영체(영세소상공인)
- 조사항목(제1차 경제총조사)
 - 법인단위표(16부문, 28장, 산업별로 나누어 기입, 매개 기업은 2~9장 기입), 산업활동단위조사표(2장), 개인상공경영체(1장)
- 조사년도 및 기준시점
 - 끝자리가 3, 8인 년도, 기준시점은 12월 31일, 조사대상기간은 조사시점의 당해연도

2. 농업총조사

- 목적
 - 농업생산요소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고, 농촌과 농민의 기본현황을 조사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전략 및 계획의 연구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의 각종 유형의 농업생산 경영단위(가구), 농촌가구 등
- 주요조사내용
 - 농업생산기본단위의 기본현황, 농촌인구와 노동력현황(성별, 연령, 민족, 교육정도 등), 업종종사시간, 농업용지, 농업생산, 농기구설비 등
- 조사표 : 농가구조사표, 비농가구조사표 등
- 조사년도 및 기준시점
 - 끝자리가 6인 년도, 기준시점은 12월 31일, 조사대상기간은 조사시점의 당해연도

3. 인구총조사

- 조사목적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략과 계획을 제정하고, 인구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조사대상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 거주하고(반년 이상) 있는 자연인
- 조사단위 : 일반가구와 집단가구

- 조사표구성(제5차 인구총조사)
 - 단표(전수조사표, 19개 지표), 장표(표본조사표, 19개 지표, 10%표본가구 추출), 사망인구조조사표(8개 지표), 임시거주인구조조사표(5개 지표)
- 조사년도 및 기준시점, 시기
 - 끝자리가 0인 년도, 기준시점은 11월 1일, 사망조사 대상 시기는 전년도

4. 농작물 생산량 조사

- 조사내용
 - 양식(양곡), 면화(면사), 식용유 등 농작물 생산량
- 조사방법
 - 각 성(직할시, 자치구)을 총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 대칭 등간격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
 - 1단계 : 각 성에서 표본 현을 선정, 전국적으로 856개 표본조사 현을 선정
 - 2단계 : 각 현에서 표본 향을 선정, 매 현마다 6-10개 향 선정
 - 3단계 : 각 현에서 표본 촌을 선정, 매 향마다 3-5개 촌 선정, 전국 약 2,000개 표본 촌이 선정, 촌단위에서 10개 표본가구 또는 10~15개 표본 필지를 선정하여 실측조사
- 조사주기 : 분기, 연간

5. 축산업조사

- 조사내용 : 축산물 생산량
- 조사방법
 - 전국 856개 표본조사 현에서 배열등간격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몇 개의 촌을 선정하며, 선정된 촌 가운데서 대규모 목축에 대해서는 전체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목축에 대해서는 10개의 농업가구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 조사주기 : 분기, 연간

6. 도소매무역숙박음식업 조사

- 조사내용
 - 도소매업 판매액, 음식점 영업수입과 상품판매액 등
- 조사방법
 - 성(자치구, 직할시)을 전체집단으로 하여 4단계 층화확률표본추출방법 사용
 - 1단계 : 성에서 현(구)를 선정하여 5개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단순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3~5개 현(구)을 선정
 - 2단계 : 현에서 향·진, 가도(동읍면)을 선정하여 3개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2개 단위를 선정
 - 3단계 : 촌, 주민위원회, 교역시장을 선정하여 3개 층으로 나눈 후 다시 소규모층으로 나누고, 각 소규모층을 전체 표본과 단순무작위추출법 또는 등간

격추출방법을 나누어 적용하여 3~5개 경영단위를 추출

- 작성주기 : 1년

7. 규모이하 공업표본조사제도

- 조사내용
 - 기업(단위) 종사자수, 총생산액, 판매(영업) 수입, 납입세금, 임금, 감가상각 등
- 조사방법
 - 성(자치구, 직할시)을 전체집단으로 하여 층화목록 또는 전체 단순무작위추출법을 사용
 - 전체 집단을 기업층과 개인상공업체층으로 나눔.
 - 기업층은 1단계 또는 2단계(현, 촌) 등간격 또는 단순무작위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 추출
 - 개인상공업체층에서는 1단계 또는 2단계(현,촌) 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

8. 농촌가계조사

- 조사내용 : 농촌가구 가계의 수입, 지출현황
- 조사방법
 - 전국 856개 표본조사 현에서 각 현마다 6~14개 촌을 선정하고 각 촌마다 5~10개 가구를 선정
 - 또는 각 현에서 3~7개 향을 선정한 후 각 향에서 2~3개 촌 5~10가구를 선정(전국적으로 60,000개 표본가구가 선정)

- 조사주기 : 월, 연도

9. 도시가계조사

- 조사내용 : 시군가구의 가정 수입, 지출 현황
- 조사방법
 - 각 성(자치구, 직할시)를 전체집단으로 하여 다단계 층화추출방법을 적용
 - 1단계 : 전국 범위에서 226개 특대·대·중·소도시와 현(군)을 선정
 - 2단계 : 표본 시에서 등간격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일정한 목표 수의 가도(동)사무소를 선정
 - 3단계 : 표본 사무소 범위 내에서 등간격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일정한목표수의 주민위원회를 선정
 - 4단계 : 등간격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일정 목표수의 가구를 선정(전국적으로 약 25,000가구의 표본을 선정)
- 조사주기 : 분기, 연간

10. 인구변동연간조사

- 조사내용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 출산 등
- 조사방법
 - 각 성(자치구, 직할시)을 전체집단으로 하여, 다단계계층확률추출방법을 사용

- 1단계 : 성에서 현(구)을 뽑아 이를 10개 층으로 나눈 후, 인구를 보조지표로 하여 확률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단위(조사구)를 선정. 표본단위(조사구) 수는 전체의 30%이상을 점유
- 2단계 : 현에서 향, 가도(동읍면)를 선정한 후 배열등간격으로 표본단위를 선정
- 3단계 : 향(가도)에서 촌, 주민위원회 전체를 배열등간격으로 하여 표본단위를 추출
- 4단계 : 무작위로 1개의 조사구역을 선정하여 전수조사 (전국적으로 120만명을 조사)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1983년 12월 8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통과. 1996년 5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의 근거로서 개정)

목 록

- 제1장 총칙
- 제2장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제도
- 제3장 통계 자료의 관리 및 공포
- 제4장 통계기구 및 통계 요원
- 제5장 법률 책임
-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며, 통계가 국정과 국력을 파악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로서 활용되고,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순리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률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통계의 기본 임무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 및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통계자료 및 통계 자문 의견을 제시하며, 통계 감독을 실행하는 것이다.

제3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개인상공사업자 등의 통계 대상은 본 법률 및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실제와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보고하거나, 은닉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시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도 없다. 자치조직 및 국민은 국가통계조사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사실과 부합하게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국가는 통일적인 통계제도를 집중적으로 작성하고, 통일된 지도와 등급에 따라 책임을 지는 통계관리제도를 실행한다.

국무원은 국가통계국을 설립하는데, 국가통계국은 조직에 대한 지도 및 국민 통계 작업에 대한 상호 협조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 각 부처 및 기업사업조직은 통계 임무의 필요성에 맞추어 통계기구를 설치하고 통계요원을 배치한다.

제5조 국가는 통계지도체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통계조사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통계의 과학성 및 진실성의 제고를 강화한다.

국가는 통계 정보 처리를 강화하고, 전송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 각 지방, 각 부처 및 각 단위의 지도자들은 통계기구를 지도 감독하며, 통계요원 및 그 밖의 관련 요원은 본 법률 및 통계제도를 집행한다. 통계 작업은 필히 대중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체나 개인은 허위, 부정 등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권리를 가지며, 신고, 고발에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서는 포상한다.

제7조 각 지방, 각 부처, 및 각 단위의 지도자들은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이 본 법률 및 통계제도에 의거하여 제공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자료 계산 또는 원래 자료 상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여 통계기구, 통계요원 및 관련자가 검사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각 지방, 각 부처, 및 각 단위의 지도자들은 통계기구나 통계요원들이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도록 무단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할 수 없다.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들은 지도자들이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도록 무단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여 본 법률 및 통계제도와 부합하도록 통계 자료를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들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행하는 직무에 대하여서는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지방, 부처 및 단위의 지도자도 통계자료를 변조하는 것에 거절이나 거부 또는 데이터 변조, 위조를 거절이나 거부를 하는 통계요원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보복 할 수 없다.

제8조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작업 책임제도를 실행하며, 본 법률 및 통계제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정확하고 정시에 통계 작업 임무를 완성하며, 국가의 비밀을 보호한다.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계조사, 통계보고, 통계 감독의 직무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제도

제9조 통계조사는 반드시 승인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국가 통계조사의 계획은 국가통계국에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국가통계국과 국무원의 관련부서에서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검토 및 비준을 받는다.

부처 통계조사 계획과 부처 관할 계통 내부에 속하는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통계국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이를 보고 한다. 해당 부처의 관할 계통의 영역을 벗어나는 조사대상은 해당 부처가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통계국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보고하여 검토 및 비준을 받으며,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국무원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비준을 받는다.

지방 통계조사 계획은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비준을 받는다.

중대한 난관 또는 그 밖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당초 정해진 계획 이외의 임시 성격을 갖는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통계조사를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통계조사표도 함께 작성하여 국가통계국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 통계국에 보고, 심사를 받거나 안을 마련한다.

국가통계조사, 부처통계조사 및 지방통계조사는 반드시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하여야 하며 상호 연관되어야 하나 중복 될 수는 없다.

제10조 통계조사는 반드시 주기적인 센서스를 기초로 하고, 경상 표본조사를 위주로 하며 필수 통계 보고표, 중점 조사, 종합 분석 등의 방법으로 기본 통계자료를 보완하고, 수집하고, 정리한다.

각 방면의 인력, 자원 등 각종 역량을 동원하여 국정 및 국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센서스는 국무원 및 각급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조직통계기구 및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를 실시한다.

경상 표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기본 통계단위 및 그 분포 상황을 명확히 조사하고, 비준된 표본조사 방법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표본을 추출한다.

기본 단위의 정기통계보고표의 실시는 엄격히 제한된다.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본조사, 중점조사 및 행정기록은 정기통계보고표에서 작성될 수 없다.

제11조 국가는 통일된 통계기준(표준)을 제정하여, 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지표의 의미, 계산 방법, 분류 목록, 조사 양식 및 통계 번호 등의 영역에서 표준화를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 통계표준은 국가통계국에서 제정하거나 국가통계국과 국무원 표준화관리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국무원의 각 부처는 보충 성격을 갖는 부처통계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 통계표준은 국가통계표준과 서로 상충될 수 없다.

제12조 본 법률과 국가 규정에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조사표에 대하여서는 유관 통계조사 대상은 이에 대한 작성 보고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국가 비밀을 탈취하거나, 사회의 공공 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3장 통계 자료의 관리 및 공포

제13조 국가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의 범위에 속하는 통계자료는 국가통계국으로 하여금 분류하도록 하고, 현금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또는 향, 진의 統計員이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부처통계조사의 범위에 속하는 통계자료는 주관 부처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가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기업 사업조직의 통계자료는 기업 사업조직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가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 국가통계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통계자료를 공포한다.

각 지방, 각 부처, 및 각 단위가 공포하는 통계자료는 본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계기구 또는 통계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가 규정의 절차에 따라 검토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가 통계데이터는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하는 데이터를 표준으로 한다.

제15조 국가 기밀에 속하는 통계자료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가정에 속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진 조사자료는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누출될 수 없다.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통계조사 중에 획득한 통계조사 대상의 영업 비밀에 대하여 비밀보호 의무를 진다.

제4장 통계기구 및 통계 요원

제16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독립적인 통계기구를 설립하고, 향 및 진 인민정부는 전임 또는 겸임 統計員을 배정하고 조직 지도 및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통계작업을 책임진다.

제1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향 및 진의 통계원의 관리 체제는 국무원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요원 편제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18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각 부처는 통계작성의 수요에 따라 통계기구를 설립하거나 유관 기구 내에 통계요원을 배정하고, 통계 책임자를 지명한다. 이러한 통계기구 및 통계책임자는 통계 업무상에서 국가통계국 또는 동급의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를 받는다.

제19조 기업 사업 조직은 국가 통계조사 또는 지방 통계조사의 임무를 집행하고, 지방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를 받는다.

기업 사업 조직은 초기 통계기록, 통계대장을 비치하고 전체 통계 자료의 검사 승인, 교부 및 서류 보관 등의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 통계국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통계조사계획의 작성, 전국 또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통계 업무의 배정 및 검사
- (2) 국가 통계조사 또는 지방 통계조사의 조직 및 전국 또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통계자료의 수집, 정리 및 제공
- (3)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분석, 통계 감독의 수행, 국무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GDP 통계체계를 작성
- (4) 각 부처에서 작성한 통계조사표 및 통계표준의 관리 및 조정

국가 통계국은 국가의 통계자동화시스템 및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관리한다. 향 및 진의 통계원은 유관 인원과 함께 농촌 기초 통계 작업을 담당하여, 국가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의 임무를 완수한다.

제21조 공무원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각 부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부처 각 직능 기구의 통계 작성 및 조정, 국가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 임무의 완수, 해당 부처의 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통계자료의 수집, 정리 및 제공
- (2) 해당 부처 및 관할 체계 내 기업사업조직의 계획에 대한 집행 현황, 통계분석현황 및 통계 감독의 실시
- (3) 해당 부처 및 관할 체계 내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 작성 및 조정, 해당 부문 통계조사표의 관리

제22조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단위 통계 작성 및 조정, 국가 통계조사, 부처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 임무의 완수, 제공 통계자료의 수집, 정리 및 제공
- (2) 해당 단위 계획에 대하여 집행 상황, 통계 분석 진행상황 및 통계 실시를 감독.
- (3) 해당 단위 통계조사표의 관리, 전체적인 통계대장 제도의 수립, 유관 기구 또는 유관 인원과 공동으로 완전한 초기 기록제도를 설정

제23조 통계기구, 통계요원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관련 단위 및 인원에게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사실과 부합한 통계자료의 요구
- (2)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고, 부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정을 요구
- (3) 통계 작업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

통계요원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한 직무를 집행하고 법률에 의하여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통계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발급한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통계요원은 사실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도덕을 준수하여야하고, 통계 임무 수행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통계기구는 통계요원에 대한 전문 훈련 및 조직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공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통계기구, 각 부처 및 기업 사업 조직은 국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계요원의 기술 직무 기능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술 직무 기능을 보유한 통계요원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5장 법률 책임

제26조 지방, 부처 및 단위의 지도자들 중에 임의로 통계자료를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변조 위조하거나, 통계기구나 통계요원들이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도록 무단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하는 자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로 하여금 비평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지방, 부처 및 단위의 지도자 중 통계자료 변조에 거절, 거부 또는 데이터 변조, 위조에 거절, 거부를 하는 통계요원을 공격하거나 보복을 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 행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한다.

통계요원들 중 통계자료의 변조, 데이터의 변조, 위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비평서를 통보하며,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관련 부처에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도록 건의한다.

제27조 통계조사 대상이 다음에 열거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수정 명령을 내리고, 비평서를 통보한다.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직접적인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그 외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요원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 (1) 통계자료를 허위 보고하거나 은닉 보고하였을 경우
- (2) 통계자료를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
- (3) 통계자료의 보고를 거부하거나 수차례 지연 보고한 경우

기업 사업 조직이나 개인상공사업자가 전항의 위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경고를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벌금에 처해졌으면, 재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통계자료를 위조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여서, 명예 칭호, 물질 포상, 직급 승진 등을 편취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결정한 기관, 그 상급 기관 또는 검찰기관으로 하여금 편취한 명예 칭호, 물질 포상, 직급 승진 등을 취소시키도록 한다.

제29조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국가 기밀을 절도하거나 본 법률에 연관된 기밀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통계조사를 이용하여 공공 사회에 손해를 주거나 사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개정 명령을 내리며, 형사상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을 구성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수사한다.

제30조 통계기구나 통계요원이 본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개인이나 가정의 조사자료 또는 통계조사 대상의 영업 비밀을 누출하여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31조 국가기관이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심사 과정 또는 통계조사표의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개정 명령을 내리며, 비평서를 통보한다.

제6장 부칙

제32조 민간 통계활동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서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의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통계조사 활동을 수행하며, 사전에 마련된 규정에 의하여 검토 승인을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3조 국가통계국은 본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34조 본 법률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3년 국무원이 공포한 『통계작업 실험 시행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세칙

(1987년 1월 19일 국무원 비준, 1987년 2월 15일 국가통계국 공포, 2000년 6월 2일 국무원 개정안 비준, 2000년 6월 15일 국가통계국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이하 통계법이라 칭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통계법에서 지칭하는 통계는 각종 통계 방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자료 및 통계 자문의 견을 제시하고, 통계 감독을 실행하는 등의 활동을 총칭한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통계 계획에 대한 분류는 국가통계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국가는 현대 정보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전체적인 국가 통계정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무원의 각 부처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현대 정보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부처 및 관할 계통의 통계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통계정보 공정을 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국가 통계정보 공정의 수행은 국가통계국의 통일된 지도에 의하여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등급에 따라 담당한다.

제4조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업무 책임제도를 수행하며, 평가 및 징벌 제도를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통계품질 및 작업 효율을 제고한다.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통계조사권: 연관 자료의 조사 및 수집, 관련 조사회회의 소집, 통계자료와 연관된 초기 기록 및 증명서에 대한 검사. 통계조사 대상은 통계법 및 국가의 연관된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와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보고하거나, 은닉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시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 (2) 통계보고권: 통계조사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및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 절차를 거쳐, 상급 지도기관 및 관련부문에 통계보고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

도 통계보고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고, 통계자료를 변조할 수 없다.

- (3) 통계감독권: 통계조사 및 통계분석에 근거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감독을 수행하며, 국가 정책 및 집행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제투자손익, 사회 효익 및 성적을 평가하고, 기존의 문제들을 검토하여 제기하며, 허위보고, 은닉보고, 위조, 통계자료의 변조 등의 행위를 검사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유관 부처 및 단위는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에 반영 하고, 노출된 문제 및 제출한 건의에 대하여서는 즉시 처리를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각 부처, 각 기업 사업 조직은 국가 통계 임무 및 해당 지역, 해당 부처, 해당 단위의 수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분야에서 통계 작업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 한다.

- (1) 통계기구, 통계요원, 기타 유관 요원이 집행하는 통계 법규 및 통계제도, 정확하고 적시성이 있는 통계 작성임무 등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통계 작업의 현대화 수립을 강화한다.
- (2) 통계요원을 선정, 조직화하여 정책과 계획에 관한 토론회 및 경제 연구 및 사회발전 문제에 관한 회의에 참여시키고, 통계 업무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3) 국가의 통일된 부서의 지시에 의거하여, 국정 및 국력에 대한 센서스를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 (4) 규정에 근거하여 통계조사계획을 검토 승인하며, 비준한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인원 및 경비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국가통계국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국가에서 집행하는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에 관한 기관이며,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조사 감독을 하며,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의 직무상의 권한을 보호하며, 동시에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에 대하여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항하여야 한다.

제2장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제도

제7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유관 부처는 다음에 열거한 3 가지의 상황에 따라 통계제도를 분리하여 수립하고, 통계조사계획을 수립하며,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기관의 비준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 (1) 국가통계조사는 전국 성격의 기본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의미하며, 국가통계국이 단독으로 마련하거나 국가통계국과 국무원의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통계조사계획을 포함한다. 국가 통계조사계획 중에서 신규 및 중

요한 통계조사는 국가통계국이 국무원에 보고하여 검토 및 기준을 받으며, 일반 성격의 통계조사는 국가통계국이 검토 및 기준을 한다. 각 지방, 각 부처, 및 각 단위는 국가통계조사방법에 근거하여 국가 통계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한다.

- (2) 부처 통계조사는 각 부처의 전문적인 통계조사를 의미한다. 부처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법은 해당 부처의 통계기구가 수립한다. 그 중에서 각 부처의 관할 계통 내에 속하는 통계조사 대상은 해당 부처의 지도자가 심사 승인을 하여, 국가통계국이나 해당 등급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보고한다. 해당 부처의 관할 계통을 벗어나는 통계조사 대상은 국가통계국 또는 해당 등급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보고하여 심사와 기준을 받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국무원 또는 해당 등급 지방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와 기준을 받는다. 각 부처 통계조사 관할계통의 구분 방법은 국가통계국과 국무원의 연관 부처가 공동으로 제출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와 기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 (3) 지방 통계조사는 지방 인민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 성격의 통계조사를 의미한다. 지방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법의 보고와 심사 방법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규정하고 국가통계국에 보고한다.

제8조 부처통계조사 및 지방통계조사는 국가통계조사와 중복되거나 모순 될 수 없다.

국가통계조사는 부처통계조사 및 지방통계조사로 업무를 분장하며, 국가통계국과 국무원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구체적으로 협의 한다.

제9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종합 협조가 필요한 통계자료는 해당 등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유관 부처로부터 수집 한다. 직접적인 통계조사 수행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는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법을 작성하여야 하며, 통계법 및 본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심사 및 기준을 거친 후에 실시 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 부처가 준비하여 실시한 부처통계조사는 반드시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기본통계자료 또는 종합통계자료를 제출한다.

국가통계국 및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반드시 정한 시기에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 부처에 연관된 종합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제10조 통계조사계획은 통계조사의 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통계조사의 계획은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의미한다. 통계조사 계획에는 반드시 다음의 항목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명칭, 조사 기관, 조사 목적, 조사의 범위, 조사 대상, 조사 양식, 조사 시간, 및 조사의 주요 내용.

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계조사방법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통계조사방법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통계조사 대상이 기재할 통계조사표 및 설명서
- (2) 정리·보고할 종합표 및 설명서
- (3) 필요한 인원, 경비 및 출처

제11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각 부처 통계기구는 심사와 비준을 위하여 보고된 통계조사계획 및 통계조사방법에 대해 그 필요성, 가능성 및 과학적 근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본 시행세칙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수정을 위하여 반환하거나 비준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통계조사방법의 수립 및 심사는 반드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이전에 비준하여 실시한 각종 통계조사 중에서 충분히 수집 가능한 자료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 (2) 상세조사, 중점조사, 또는 행정기록으로 충분히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통계조사표에 포함할 수 없다. 1회의 통계조사로서 충분한 것은 일반성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연간 통계조사로서 충분한 것은 분기별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분기별 통계조사로서 충분한 것은 월별 통계조사를 할 수 없다. 월 단위 이하의 진도 통계조사는 반드시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 (3) 신규 통계조사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소규모로 시험 통계를 작성하거나 또는 유관 지방, 부처 및 기본 단위로부터 의견 청취, 진행 가능성 토론, 실질적인 가능성의 보증, 조사의 투자손익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4) 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인원 및 경비는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주기적인 센서스 실시체도를 수립한다. 주기적인 센서스는 국무원 및 지방 각급의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통계기구 및 유관 부처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비는 중앙 및 지방 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경상 표본조사의 실시는 반드시 기본 통계단위 센서스 및 행정기록을 근거로 해야 하며, 기본 통계단위 및 분포 현황을 명시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표본 추출 계획을 설정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 전체 중에서 추출한 표본이 그 대상 전

체를 대표하는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표본오차를 축소한다.

제13조 절차와 비준규정에 따라서 통계조사표에는 우측 상단 모서리에 조사표 번호, 양식 제정 기관, 비준기관, 비준문서번호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열거한 내용을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통계조사표에 대하여서는 통계조사 대상은 이에 대한 기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 통계기구는 이를 폐지할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통계조사개요(방안)에는 의의, 조사 범위, 계산 방법, 분류 목록, 조사 양식, 통계 부호 등을 규정해야 하며, 비준을 거치고 기관이 동의한 통계조사개요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수정할 수 없다.

제3장 통계자료의 관리 및 공포

제15조 각 지방, 각 부처 및 각 단위는 통계자료의 심사제도를 확립하고,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보장한다.

각 부처 및 각 기업 사업 조직이 제공한 통계자료는 해당 부처 및 해당 단위의 지도자 또는 통계 책임자가 심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상부에 보고한다. 재무회계기구 또는 회계요원이 제공하는 연관 재무 통계자료는 재무회계 책임자가 심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향 및 진의 통계원이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등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책임자 또는 향 및 진의 통계원이 심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상부에 보고한다.

제16조 각급 지도기관은 정책, 계획, 검사 정책, 계획 집행 현황, 경제 효익 평가, 사회 효익 및 작업 성적, 표상 및 징벌 진행 등을 제정하며,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통계자료를 표준으로 한다.

제17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 정보에 대한 자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사회 공중 업무를 위하여 공개한 사회 경제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 유관 규정에 의하여, 통계법 및 통계제도 규정 이외의 통계 정보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통계국과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18조 각 지방, 각 부처 및 각 단위는 국가와 연관된 통계자료의 비밀 보호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통계자료의 비밀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9조 각 지방, 각 부처 및 각 단위는 통계자료 서류보관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통계자료의 보관, 적용 및 이전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서류보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전체적인 통계자료 정기 공포 제도를 수립한다. 국가통계국 통계조사에서 획득한 통계 자료는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한다. 국무원 산하 통계부처의 통계조사에서 획득한 자료는 국무원 산하 부처가 공포 한다 : 이 중에서 국가통계국 통계조사에서 획득한 통계자료와 중복되거나 서로 교차되는 것은 국가통계국과 협의 후에 공포 한다. 국무원 산하 부처가 공포하는 통계자료는 공포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통계국에 보고하여 방안을 마련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 및 유관 부처는 상기의 통계조사에서 획득한 지방 통계자료를 공포하고, 상기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21조 국가는 전체적인 통계자료 품질 관리 및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국내총생산 등의 중요 통계자료의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한다.

제4장 통계기구 및 통계요원

제22조 국가통계국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유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유관 정책과 계획을 근거로 통계업무규정을 제정하고, 통계업무 현대화 계획 및 국가통계조사계획을 수립하며, 전국 통계업무 지도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심사 감독을 한다.
- (2) 전국 GDP 통계체계, 통계 지표 체계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본통계보고표 제도를 제정한다. 국가통계표준 및 부처 통계 표준 심사 제도를 자체 또는 유관 부처과 공동으로 제정한다.
- (3) 국무원의 지도하에, 유관 부처 조직과 공동으로 센서스와 전국 도시 및 농촌 경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 (4) 국가에서 제정한 정책과 계획 및 관리 집행의 수요에 따라 전국 성격의 기본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 및 제공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분석, 통계예측 및 통계감독을 진행한다.
- (5) 국무원 각 부처에서 작성한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안을 심사하고, 국무원 각 부처에서 제정 발표한 통계조사표를 관리한다.

- (6) 전국적인 성격의 기본 통계자료를 검사, 선정, 관리, 공포 및 출판하고, 전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의 통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 (7) 전국 도시 및 농촌 사회 경제 표본조사팀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한다.
- (8) 전국통계에 대한 학술연구, 통계교육, 통계간부의 훈련 및 통계서적 출판과 간행 업무를 조직적으로 지도한다.
- (9) 통계업무 및 통계과학의 국제 교류를 추진한다.

제2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국가 통계조사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 통계표준을 집행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본 통계보고표 제도를 수행한다.
- (2) 해당 행정구역 내의 통계업무 현대화 계획, 통계조사계획 및 통계조사방안을 제정하고, 해당 행정 구역 내에 포함된 중앙 및 지방 단위의 통계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협조하며,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검사하고 감독한다.
- (3)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제정한 계획의 관리를 위해 기본 통계자료를 수집·정리 및 제공하며,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통계분석, 통계예측, 및 통계감독을 진행한다.
- (4)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각 부처의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안을 심사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각 부처가 제정한 통계조사표를 관리한다.
- (5) 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기본 통계자료를 검사, 선정, 관리, 공포 및 출판한다.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해당 등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상황의 통계보고서를 발표한다
- (6) 해당 행정구역 내의 도시 및 농촌 사회경제 표본조사팀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 (7)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각 부처와 각 단위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통계 기초 확립을 강화하며, 통계 교육, 통계 간부 훈련과 통계과학 연구 활동을 강화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인민정부 통계기구 간부, 향, 촌의 통계원에 대한 평가와 포상을 수행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통계기구는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 및 상위 등급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로부터 중복된 지도를 받으며, 통계업무 상에서는 상위 등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를 위주로 한다.

제24조 향과 진의 統計員은 향과 진의 종합통계의 직능을 집행하며, 다음의 직무

를 수행한다.

- (1) 국가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 임무를 완성하고, 국가 통계표준을 집행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본 통계표 제도를 집행하며,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를 집행하며,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를 검사하고 감독한다.
- (2) 국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향 및 진의 기본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제공 및 관리한다.
- (3) 해당 향 및 진의 각각의 유관 단위 및 인원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농촌 통계 기초 업무 확립을 강화하고, 향 및 진의 통계장부제도 및 통계 서류보관제도를 확립하며, 향 및 진 이하의 통계 업무를 조직한다.

향 및 진의 인민정부는 통계법 등의 유관 규정 및 통계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전임 또는 겸임의 통계원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향 및 진의 통계정보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향 및 진의 통계원과 향 및 진의 통계정보 네트워크는 통계업무 상에서는 현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를 받는다.

촌의 통계업무는 촌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전문요원이 담당하며, 통계업무 상에서는 향 및 진의 통계원의 지도를 받는다.

제25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 부처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는 해당 부처 종합통계의 직능을 집행하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부처 각 직능 기구(생산, 공급과 판매, 기본 업무, 노동과 인사, 재무회계 등의 기구)의 통계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며, 통합적으로 협조하고, 국가 통계조사, 부처 통계조사 및 지방 경제조사의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를 집행하며,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를 검사하고 감독한다.
- (2) 해당 부처의 통계업무 현대화 계획, 통계조사 계획 및 통계조사 방안을 제정하고, 해당 부처 및 관할 계통 내의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업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며, 통계팀 및 통계기초 업무 확립을 강화한다.
- (3) 국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상위 등급의 지도기관 및 해당 등급의 인민정부 통계국은 해당 부처의 기본 통계자료, 계획을 보고·제공하며, 기타 유관 직능기구는 해당 부처에 대하여 정책, 계획 및 경영관리 투자손익 파악을 담당하며, 통계분석, 통계예측 및 통계감독을 담당한다.
- (4) 해당 부처가 제정한 통계조사표 및 기본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 (5) 해당 부처의 인사교육기구와 협력하여 해당 부처의 통계교육 및 통계 간부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해당 부처 통계요원에 대하여 평가와 포상을 수행한다. 해당 부처의 통계과학 연구활동을 강화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유관부처의 통계기구의 설치는 실제 수요, 간편성 및 효능의 원칙에 근거하고 통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제26조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는 해당 단위 종합 통계의 직능을 집행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기구의 각 직능기구 및 하부 기구의 통계 업무를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통합적으로 협조하며, 국가 통계조사, 부처 통계조사 및 지방 통계조사의 임무를 공동으로 완성하며, 해당 단위의 통계업무 계획 및 통계제도를 제정하고 실시하며,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를 집행하며,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실시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 (2) 국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주관 부처 소재지의 인민정부 통계기구 또는 향 및 진의 통계원에게 통계자료를 보고하고 제공하며, 해당 단위에서 계획한 집행 현황 및 경영 관리의 투자손익에 대하여 통계분석 및 통계감독을 수행한다.
- (3) 해당 단위의 통계조사표 및 기본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 (4) 해당 단위 유관 직능 기구와 협조하여 계량 및 검사 제도를 확립하며, 전체적인 초기 기록, 통계장부 및 계산 제도를 수립한다.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책임자는 통계업무 상에서 소재지의 인민정부 통계기구 또는 향 및 진의 통계원의 지도를 받는다.

2인 이상의 통계요원을 갖추지 아니한 중소형 기업 사업 조직에서는 요원을 전문적인 책임 통계 작업에 지정 할 수 있다.

제27조 통계책임자는 해당 부처 또는 해당 단위를 대표하고 통계법 규정 직무를 이행하는 주요 책임 요원을 의미한다. 통계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통계 전문 직무 요건을 구비한 요원이 통계책임자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28조 각 지방, 각 부처 및 각 단위는 국가의 유관 규정 및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통계 전문 기술직무를 설정한다.

제29조 통계 전문 기술 직무를 구비한 요원의 이동은 해당 지구, 해당 부처, 및 해당 단위의 통계기구 또는 통계 책임자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중급 이상의 통계 전문 기술 직무를 구비한 요원의 이동은 상급 통계기구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주요 책임자의 이동은 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향 및 진의 통계원의 이동은 현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동의를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각 부처 및 기업 사업 조직의 통계책임자의 이동은 상급 주관 부처 및 소재

지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제30조 국가 통계국 및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요원에 대하여 직무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소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통계국 및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요원의 충원을 담당하고 통계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5장 포상 및 징벌

제31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각 부처, 각 기업 사업 조직은 국가 또는 기업 사업 조직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원 또는 단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한다.

- (1) 통계제도 및 통계방법 개혁과 완수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자
- (2) 규정된 통계조사 임무의 완수, 통계자료 정확성의 보장 및 적시성의 분야에서 주요하게 공헌한 자.
- (3) 통계분석, 통계예측 및 통계감독의 수행 분야에서 주요하게 공헌한 자.
- (4) 현대 정보 기술의 운용 및 배포의 분야에서 주요한 결과를 낸 자.
- (5) 통계교육 및 통계 전문 교육의 개선, 통계 과학 연구의 수행 및 통계 과학 수준의 재고 등의 분야에서 주요하게 공헌한 자.
- (6) 사실성의 견지, 합법적인 업무처리, 통계법규 및 통계제도의 위법 행위방지와 관련하여 현저한 결과를 낸 자.
- (7) 통계 위반행위 고발 및 신고에 공로가 있는 자.

포상은 일반 상장, 공적 기록, 공적 대기록, 진급, 승직, 명예칭호 수여 등으로 분류하고,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금은 국가 및 기업 사업 조직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관 경비에서 지출한다.

제32조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은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서 칭하는 사정이 중한 위법행위이다.

- (1) 통계자료의 수치나 수치의 비율을 비교적 큰 차이로 허위보고, 은닉보고, 위조 또는 개조.
- (2) 통계자료의 허위보고, 은닉보고, 위조, 또는 정정 또는 제출 거부를 하고, 2년 이내에 재발하였을 경우.
- (3) 통계자료의 허위보고, 은닉보고, 위조, 또는 정정 또는 제출 거부를 수차례 하여 개정 명령을 받았으나 개정을 거부한 경우.
- (4) 통계자료의 허위보고, 은닉보고, 위조, 또는 정정 또는 제출 거부를 수차례

하여서 중대한 결과 또는 영향을 초래한 경우.

- (5) 통계검사 수검 시에 상황 제공을 거부하거나, 초기 자료, 통계 대장, 통계보고표 및 통계와 관련한 기타의 자료를 허위보고 또는 변형, 은닉, 폐기한 경우.
- (6) 폭력 또는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조사를 방해 혹은 거부한 경우.
- (7) 국가통계국이 위법으로 인정하는 기타의 행위.

제33조 기업 사업 조직이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들 중 어느 하나에 속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경고를 하고 5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인상공사업자가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들 중 하나에 속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경고를 하고 1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34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통계법 제29조 제2항에서 열거한 위법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개정 명령을 내리며, 다시 이 개정 명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당초의 위법 처분 보다 1 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35조 해외에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진행하는 통계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있는 대외 통계조사 자격을 갖춘 기구에 위탁한다.

통계조사의 범위는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행정구역 이내로서 특정한 증명 문서 및 통계조사방안을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제출 신청하면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통계조사의 범위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행정구역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정한 증명 문서 및 통계조사방안을 국가통계국에 제출 신청하고 국가통계국이 검토·승인한다.

제36조 본 시행계획은 공포일자로부터 시행한다.

한중양자협력회의 관련 사진

□ 국가통계국







□ 귀주성 통계국



한중양자협력회의 대비 질의서

I. 중국의 국가통계제도 및 통계법령

1.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

-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집중형인가, 분산형인가?
 - 분산형이라면 어떤 기관들이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가?
 - 국가통계시스템에 비정부기관이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례를 설명해 주시오.

2. 중국의 통계활동관련 법령체계

- 통계활동과 관련된 법률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통계법 외에 통계활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오.
-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중국의 법률체계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3. 중국의 통계법령의 개정절차

- 통계법 등 통계활동과 관련된 법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 개정되는가?
 - 개정안은 국가통계국에서 마련하는가? 아니면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마련하는가?
 - 구체적인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개정안 마련 시 다른 부처 등 관계기관과 국민 등의 의견은 수렴하는가?

4. 중국의 통계활동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는?
 - 중앙정부에서 생산된 통계만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방정부, 중앙은행 및/또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 민간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 통계작성목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 통계법을 포함한 통계활동 관련법령에서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국가통계국에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목적으로 행정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면, 협조는 잘 되는가?
- 다른 정부기관이 통계법의 각종 규제(또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또는 제재)하고 있는가?
- 통계조사에서 통계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가통계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또는 제재)하고 있는가?
 - 응답거부자 등에게 실제로 벌금부과 등의 제재를 한 적이 있는가?

5. 향후 중국의 통계활동 관련법령의 개정계획

- 통계법을 포함한 통계활동 관련법령을 향후 몇 년 내에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있다면 어떤 통계제도를 국가통계시스템에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II. 중국의 통계교육 체계 및 내용

1. 중국의 통계교육 체계

- 중국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통계인력들에 대한 통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2. 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의 구성 및 기능 관련

- 국가통계교육훈련에서 통계교육센터의 위상 및 기능은?
 - 국가 차원의 통계교육에 대해서는 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 통계교육센터의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은?
 - 하부조직의 구성현황 및 하부조직별 구체적인 기능
- 통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통계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통계교육센터의 구체적인 통계교육과정의 현황 및 내용은?
 - 교육과정 구성현황 및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 통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통계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 통계교육센터에서는 전임교수요원을 어떻게 충원 및 관리하고 있는가?
 - 대학교수 등을 교수요원으로 위촉하고 있는가?

3. e-learning 또는 cyber 통계교육 실시 현황 및 방향

- e-learning 또는 cyber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e-learning 또는 cyber 통계교육 운영현황 및 관리방법 등
 - e-learning 또는 cyber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

Ⅲ. 중국의 통계조정제도

1. 통계작성의 승인 관련

-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통계의 종류 및 기준은 무엇인가?
- 국무원의 통계비준 과정과 검토내용
 - 다른 통계와 조사항목과 대상이 유사한 경우 처리 방법
 - 비준된 통계의 유효기간

(2006년 말 현재 작성되고 있는 국가통계수, 조사, 보고 분리)
-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는 부문통계의 사전 검토 절차 및 내용
- 국무원 비준과 통계국에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통계의 종류
- 통계작성비준의 취소 요건 및 절차
- 1회한 통계조사에 대한 관리 방안

2. 국가통계조정 담당기관

- 국가통계국에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수
- 국가통계국의 통계조정의 구체적인 내용(기능)
- 민간통계작성기관의 조직 및 인력, 통계작성에 대한 조정 기능

3. 통계결과의 공표

- 작성한 통계결과의 공표시 사전 심사 절차 및 심사 담당기구
- 각 기관별로 공표한 통계의 결과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관리 방안

4. 통계법 위반행위

- 사전 심사, 비준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내용(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5.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각급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관리
- 각급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방안

[붙임자료1] : 영문 또는 중문 혼용

I .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NSS) and the Statistical legislation of China

1.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of China

-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집중형인가, 분산형인가?
 - 분산형이라면 어떤 기관들이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가?
 - 국가통계시스템에 비정부기관이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례를 설명해 주시오.

- How does the NSS of China -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 If it is decentralized, which organization does include in the NSS?
 - Are there an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NSS? If any, please explain the examples.

2. the legislation related to Chinese statistical activities

- 통계활동과 관련된 법률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통계법 외에 통계활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오.

- How does the legislation related to statistical activities constitute - laws, enforcement ordinances, etc.?
 - Are there any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related to statistical activities except the statistical law? If any, please explain the major contents of them.

- 중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중국의 법률체계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 How is the NSS of China reflected in the Chinese statistical legislation? In other words, do the Chinese laws and any other ordinances, etc. include things related to the NSS of China?

3. the revision procedure of statistical legislation in China

- 통계법 등 통계활동과 관련된 법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 개정되는가?
 - 개정안은 국가통계국에서 마련하는가? 아니면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마련하는가?
 - 구체적인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개정안 마련 시 다른 부처 등 관계기관과 국민 등의 의견은 수렴하는가?
- Which procedure have the statistical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s been revised thorough in China?
 - Have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been preparing the revised drafts? Otherwise, have other department or organization been preparing?
 - How is the detailed revision process?
 - When preparing the revision draft, do you have any procedure to get ideas, opinions or suggestions from other related organization and people?

4. the contents of the statistical legislation in China

-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는?
 - 중앙정부에서 생산된 통계만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방정부, 중앙은행 및/또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 민간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 Which organizations are under the regulation of the statistical law in China?
 - Is the statistical law regulating the statistics produced by only central government offices? Otherwise, are other organizations - local government offices, the central bank and/or other public organizations - also regulated by the law?
 - Is statistics produced by private organization also regulated by the law? If any, please explain them.
- 통계작성목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
 - 통계법을 포함한 통계활동 관련법령에서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 자료 제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가?
 - 국가통계국에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목적으로 행정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면, 협조는 잘 되는가?
- Have administrative data been used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the official statistics in China?
 - Are/Is there any provision(s) related to using administrative data in the statistical legislation including the statistical law in China?
 - If NBSC have been received administrative data from other government agencies, do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to get administrative data?
- 다른 정부기관이 통계법의 각종 규제(또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또는 제재)하고 있는가?
- If other government department or agency violated the regulation(or duty) in the statistical law, how did NBSC

manage that case(or take sanctions against that agency)?

- 통계조사에서 통계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가통계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또는 제재)하고 있는가?
 - 응답거부자 등에게 실제로 벌금부과 등의 제재를 한 적이 있는가?

- When a respondent refuse or evade to make an answer in a census or survey, how does NBSC manage that case(or take sanctions against him/her)?
 - When a respondent refuse or evade to make an answer in a census or survey, have NBSC ever imposed the fine against him/her?

5. the future revision plan about statistical legislation in China

- 통계법을 포함한 통계활동 관련법령을 향후 몇 년 내에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있다면 어떤 통계제도를 국가통계시스템에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 Does NBSC have a plan to revise the statistical legislation including the statistical law?
 - If NBSC have a plan, which statistical system do you think to introduce in the NSS of China?

II. the national statistical training system in China

1. the national statistical training system in China

- 중국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통계인력들에 대한 통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 How is make up of the national statistical training system for statisticians who are working in the NBSC,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or public organization in China?

2.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Statistical Training Center under NBSC

- 국가통계교육훈련에서 통계교육센터의 위상 및 기능은?
 - 국가 차원의 통계교육에 대해서는 국가통계국 통계교육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 Which status and function has the Statistical Training Center in the national statistical training system?
 - Does the Center play a major role in the national statistical training system?
- 통계교육센터의 구체적인 구성 및 기능은?
 - 하부조직의 구성현황 및 하부조직별 구체적인 기능
- How is the Center made up of (lower branch, division or subsection)?
 - What function do the lower branch of the Center?
- 통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통계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Who is the trainee in the Center?

- 통계교육센터의 구체적인 통계교육과정의 현황 및 내용은?
 - 교육과정 구성현황 및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 How about the details on statistical training course - the number and contents of courses?
- 통계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통계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 How have the results of the training been evaluated in the Center?
- 통계교육센터에서는 전임교수요원을 어떻게 충원 및 관리하고 있는가?
 - 대학교수 등을 교수요원으로 위촉하고 있는가?
- Does the Center recruit and manage the full-time professor or instructor? If do, and How?
 - Does the Center outsource the professor or instructor?

3. the current course and future plan about statistical e-learning(or cyber-training)

- e-learning 또는 cyber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e-learning 또는 cyber 통계교육 운영현황과 개설준비 및 관리방법 등
 - e-learning 또는 cyber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
- Do the Center set up the e-learning or cyber-training course?

- If so, please explain which courses are and how do the Center prepare and manage the courses.
- If so, how do you develop the courses?

III. the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in China

1. 통계작성의 승인 관련

-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통계의 종류 및 기준은 무엇인가?
- 국무원의 통계비준 과정과 검토내용
 - 다른 통계와 조사항목과 대상이 유사한 경우 처리 방법
 - 비준된 통계의 유효기간
(2006년 말 현재 작성되고 있는 국가통계수, 조사, 보고 분리)
-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는 부문통계의 사전 검토 절차 및 내용
- 국무원 비준과 통계국에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통계의 종류
- 통계작성비준의 취소 요건 및 절차
- 1회한 통계조사에 대한 관리 방안

1. 關於統計調查的批准

- 依法應該經過國務院批准的統計種類
- 國務院統計批准的程序和審批內容，准則
 - 類似其他統計項目的內容處理辦法
 - 批准的有效期為多年
2006年末現在，公布的統計種類（分別調查和報告）
- 對不必國務院批准部門統計的審批程序和內容
- 不必向統計局報告和批准的統計種類
- 取消批准的條件和程序.
- 1次性統計調查管理方案.

2. 국가통계조정 담당기관

- 국가통계국에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수
- 국가통계국의 통계조정의 구체적인 내용(기능)
- 민간통계작성기관의 조직 및 인력, 통계작성에 대한 조정 기능

2. 關於担任統計設計管理的机构

- 担任統計設計管理机构和人員數（包括地方政部統計部門）
國家統計局和地方政部有關部門的關係.
- 國家統計局有關部門和職員的具体的任務內容
- 對民間統計機關的組織，統計人員和統計活動管理方案.

3. 통계결과의 공표

- 작성한 통계결과의 공표시 사전 심사 절차 및 심사 담당기구
- 각 기관별로 공표한 통계의 결과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관리 방안

3. 關於統計資料公布

- 統計資料公布以前怎么審批，誰負責
- 對每家統計機關公布的統計資料國家統計局的前后管理方案

4. 통계법 위반행위

- 사전 심사, 비준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내용(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4. 關於違反統計法行爲

- 對違反統計法行爲處理辦法（分別政府部門和民間部門）

5.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各급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관리
- 各급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방안

5. 關於對統計機關支援和管理方案

- 對各級各部門統計機關人員和預算支援和管理方案
- 對各級各部門統計機關技術上指導和支援方案